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

## 검 토 보 고 서



2024. 9.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9. .

도시환경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이진환 의원 등 9명(황국주, 강한곤, 권숙자, 임미연, 박왕규, 김정희, 서보영, 이선주)
- 발의일자: 2024. 9. 12.
- 회부일자: 2024. 9. 12.
- 검토기간: 2024. 9. 12. ~ 9. 20.

## 2. 제정이유

-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화재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와 안전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관련부서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에어컨 실외기 지원사업 및 대상(안 제4조 ~ 제5조)
- 에어컨 실외기 관리와 안전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4.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4. 9. 12. ~ 9. 23.):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은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와 관련한 화재가 증가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화재예방을 통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

## 대구광역시달서구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에어컨 실외기”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를 말한다.
3. “안전활동”이란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에어컨 실외기 관리에 관한 교육과 정기적인 점검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4.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5. “에어컨 실외기실 자동개폐장치”란 에어컨을 켜면 자동으로 실외기실 개폐장치가 열리고, 에어컨을 끄면 실외기실 개폐장치가 닫히도록 설계돼 여름철 냉방 성능 저하나 화재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와 안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사업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와 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에어컨 실외기 관리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주민 안전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
2. 에어컨 실외기 점검과 안전에 필요한 관리요령의 개발·보급
3. 공동주택 시설관리자 대상 에어컨 실외기 관리·점검 교육훈련 지원
4. 에어컨 실외기 설치개선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5.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실 자동개폐장치 등 홍보 지원
6. 그 밖에 에어컨 실외기와 관련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내 공동주택단지에 한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와 안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대구소방안전본부, 관련기관·단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 지원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소방관서장은 국민의 화재 예방과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 및 홍보
2. 소방대상물 특성별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동요령의 개발·보급
3.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화재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5.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6. 그 밖에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활동에 국민 또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국민이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